

◎여수지청공고 제2026-49호

우리지청 관내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불임과 같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06월 1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업장명 (인증번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
		근거규정	처분사유		
유한회사 바늘쟁이 (제2014-156호)	김00 (전남 순천시 호남길 00)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제1항제2호)	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 미충족 (일 자 리 제 공 형 근로자 3명 이상 고용)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26.6.4.